



국민과 함께 자연과 함께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0. 8. 4
 제공자 :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
 과 장 : 전 한 영
 사무관 : 박 성 기
 전 화 : 500-1955
 쪽 수 : 4P
 별첨자료 : 있음(4P)

이 자료는 2010년 8월 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9월부터 막걸리, 약주, 청주, 과실주에 술 품질인증 실시

- 인증마크 부착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통한 고품질 술 생산 가속 전망
- 8월 5일부터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시행으로 우리술산업 진흥정책 본격 가동
- 명주 육성을 위한 정기적 술 품평회 개최, 술산업을 선도해 나갈 전문 인력 양성,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권한의 지자체 위임 등 내용 담아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, 품평회, 전문인력 양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을 '10.8.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- 이는 지난해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('09.8.26)가 “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”을 발표하면서, 국세청이 실시중인 '주류품질인증제'와 '주류품평회' 등 술 산업 진흥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결정한 사항이 법적으로 뒷받침된 결과다.

<술 품질인증제 제도마련 추진경과>

- 「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」 제정(국세청고시 제2009-16호, '09.5.25.), 시행
- “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” 발표(제16차 국경위 '09.8.26.) 농식품부 전담
-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'09.12.30), 공포('10.2.4), 시행('10.8.5)

□ 술 품질인증제는 인증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국가가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,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미리 고시한 다음 품질인증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, 합격한 경우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교부하는 제도로, 품질인증을 받은 술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가 촉진될 전망이다.

-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품질인증기준 고시, 품질인증기관 지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9월경부터 업체들의 품질인증 신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고,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은 8월 중순경 판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고시하겠다고 밝혔다.
- 또한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은 법률 시행 첫해인 만큼 전통주의 대표 주종인 탁주(막걸리), 약주, 청주,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우선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, 향후 품질인증 효과나 인증수요 등을 감안 증류식소주, 일반증류주, 리큐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
- 금년 품질인증 대상 4개 주종에 대한 현재 주류제조면허 업체수는 1,100여개로 이중 막걸리 업체가 약 70%인 760여개로 금년 품질인증의 대부분이 막걸리 주종에 대한 품질인증이 될 것으로 보인다.
- 막걸리 등 위 4개 주종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 중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8월 중순경 고시되는 주종별 품질인증기준을 살펴보고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품질인증기관(8월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할 계획)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.

- 품질인증 심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으로 부터 ‘품질인증서’가 발급되고 수출 등을 위해 영문 ‘품질인증서’가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‘품질인증서’도 발급이 가능하다. 또한 품질인증품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정하여 고시하는 품질인증 표지(마크)를 해당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붙이거나 인쇄하여 판촉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.
- 농식품부는 품질인증 표지(마크)를 아래 “가”형과 “나”형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녹색 바탕의 “가”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모든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, 황금색 바탕의 “나”형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중 해당 술 제조에 사용된 주원료와 국(麴)의 제조에 사용된 농산물이 100%국내산인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


< “가” 형 >



< “나” 형 >
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술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,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,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,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밝혔다.

- 농식품부는 술 품질인증제 외에도 그간 비정기적으로 해오던 술 품평회도 금번 법률 시행으로 법적 근거를 확보한 만큼 명실공히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주 육성의 장으로 활용하기위해 금년에는 10월초에 “제1회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”를 개최하고, 매년 정기적으로 행사를 내실화 해나갈 계획이다.
- 농식품부 관계자는 “농식품부 장관이 해오던 국세청에 대한 전통주 제조면허추천 권한을 금번 법령 개정으로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지역 특산주 육성 및 술과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로 지역농산물 사용 증대 등 지역농업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”고 덧붙였다.

술 품질인증제 설명자료

① 술 품질인증제 경과

○ 국세청 주류품질인증제 실시

- 2009년 「주류품질인증에 관한 고시」(국세청고시 제2009-16호, 2009. 5. 25.)를 제정하여 처음 시행
- 2개 주종(과실주, 약주)을 대상으로 일괄 품질인증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84개 제품(과실주 43, 약주 41)에 대해 품질인증서 교부('09. 10. 28.)

○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「우리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」 발표('09. 8. 26.)

주류 품질인증 관련 주요내용

- 우리술의 품질고급화를 위해 품질인증제 활성화
- 우리술 산업 진흥을 위해 기획재정부(국세청)와 농림수산물품부의 역할을 고유기능에 맞게 재정립
- 현재 국세청이 시행중인 “주류품질평화” 및 “주류품질인증제”는 향후 농림수산물식품부에서 수행

○ 「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정('10. 2. 4. 공포, '10. 8. 5. 시행)

- 법 제22조에 술 품질인증 실시 근거규정 마련

제22조(품질인증)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술의 품질향상, 고품질 술의 생산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품목·표시방법·인증절차, 그 밖에 품질인증제도의 실시상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② 술 품질인증 과정

○ 품질인증 대상품목(주종) 지정 (시행령 제5조)

⇒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

※ 2010년은 4개 주종(탁주, 약주, 청주, 과실주)을 고시

○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품질인증기준 제정(시행령 제8조)

⇒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정하여 고시

※ 인증기준은 한국식품연구원에 의뢰하여 개발

○ 품질인증기관 지정(시행규칙 제13조)

⇒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

○ 품질인증 실시(시행령 제7조)

⇒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(예, '한국식품연구원' 등)에서 심사 방법 및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 후 인증서 교부 [품질인증 마크 사용 가능]

③ 주류 품질인증제 시행 기대효과

- 우리술의 품질 고급화 및 양조기술 향상
- 품질인증 술에 대한 제품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
- 품질인증 술의 판매촉진으로 생산업체의 경영개선
- 술 제조시 우리농산물 사용 촉진으로 국내 생산농가 보호 등

※ 인증대상 주종(4종)별 주류제조면허 업체 수

주종	계	탁주	약주	청주	과실주
업체수	1,125	768	184	6	167

* 자료 : 국세청 통계자료, 2009년말 기준

<참고자료 2>

술 분류(Classification)

구분	주종	주원료	제조공정	종류
원역	주정	카사바, 고구마 등	알콜분 85도 이상 증류	발효주정, 정제주정(조주정 증류)
발효주	탁주(탁걸리)	곡류+국 ¹⁾	병행복발효 ²⁾	탁주(탁배기), 백주, 농주, 모주, 젖내기술 등
	약주	곡류+국	"	소곡주, 호산춘
	청주	곡류+국+주정	"	경주법주, 화랑, 국향, 실화
	맥주	보리+홉(hop)+효모+기타 1개 이상[백미, 옥수수, 고량(수수), 전분, 당질, 카라멜]	단행복발효 ³⁾	발효법 상온(쓰랏) ⁸⁾ : Stout, Porter, Lambic 저온(부드런맛) ⁹⁾ : 원형, 비필젠 등 Dry : 남아 있는 당 최소화 Super-Dry : 단맛 없음 Dehusk : 맥아껍질 제거 Ice ¹⁰⁾ : 영하 3~5℃ 추가숙성, 잡미제거
				양조법
				기타
				생맥주 : 비살균 초정밀여과 샌디맥주 ¹¹⁾ : 레몬향 혼합, 여성용
	과실주	과실 - 건조과실, 과실즙	단식발효 ⁴⁾	색깔 화이트, 레드, 로제
				맛 스위트 드라이 미디엄 드라이 기타 (비)발포성, 혼성, 강화
	소주	중류식 회석식 곡류+누룩 주정+첨가물	병행복발효주원료 ⁵⁾	순알콜량의 50% 이내 주정사용 불휘발분 2% 이내 (이상은 리큐르)
	위스키 (Whisky)	곡류+효모	단행복발효주원료 ⁶⁾	몰트 : 발아대맥+맥아+피트(peat) 몰트 그레인 : 미발아대소맥 소맥 호맥 옥수수맥아 브렌디 : 몰트+그레인 혼합 버번 : 51% 이상 옥수수(새 참나무통 숙성) 콘 : 옥수수 80% 이상 라이 : 귀리 50% 이상 테네시 : 버번위스키와 동일(목탄 여과)
				산지 스카치, 아이리쉬, 아메리칸, 캐나다인
	브랜디 (Brandy)	과실	단행복발효주원료 ⁷⁾	원료 포도, 사과, 자두 지역 꼬냑, 아르마냑, 칼바도스, 키르쉬바서
증류주	일반 증류주	럼 (Rum)	"	제조법 해비럼 : 당밀 자연발효, 나무통 숙성 미디엄럼 : 나무통 숙성(약하게) 라이트럼 : 발효원액을 연속 증류
		진 (Gin)	"	* 카테일의 소재 : 라임주스, 토닉워터 - vermouth(포도주)+Gin=마티니
		고량주 수수	병행복발효주원료	중국 8대 명주 : 마오타이주, 죽엽청주, 오량맥주, 분주, 노주노교, 양허주, 동주, 고정공주
		보드카 (Vodka)	단행복발효주원료	러시아어(=지즈너야 위다; 생명의 물)
		테킬라 (Tequila)	단행복발효주원료	숙성 미숙성 화이트테킬라(실버) 통에서 숙성 골드테킬라
		리큐르	다른 술+식물성 향미 성분+설탕(별첨)	- 약초, 과일, 종자 * 일반가정에서 약재(과실)+소주방식
	기타주류	기타	분발 발효주+증류주 등	알콜분 1도 이상
				감미포도주, 기타 합성주, 미림

참고자료3

국내 주류제조면허 추이 ('09.12.31. 현재)

(단위: 개, %)

주종	제조장수	1980년	1990년	2000년	2005년	2006년	2007년	2008년 (A)	2009년 (B)	증감률 (B/A, %)
합 계		1,564	1,433	1,295	1,421	1,405	1,424	1,467	1,504	2.5
주 정		17	13	12	10	10	11	11	11	-
탁 주		1,461	1,321	992	813	782	778	780	768	△1.5
약 주		30	30	111	164	177	180	190	184	△3.2
청 주		4	3	3	6	5	6	6	6	-
맥 주	일 반	5	7	7	6	6	6	6	6	-
	소규모	-	-	-	112	100	93	88	77	△12.5
과 실 주		10	9	25	84	82	131	142	167	17.6
증류식소주		-	2	14	21	24	27	29	35	20.7
회석식소주		11	10	17	17	17	17	17	17	-
위 스 키		5	3	5	8	7	8	8	10	25
브 랜 디		1	1	3	5	5	5	5	5	-
일반증류주		-	-	27	34	37	42	52	55	5.8
리 큐 르		-	-	72	96	88	89	89	89	-
기 타 주 류		20	34	7	45	65	31	44	74	68.2

주: 밀술 2(경기1, 충남1), 술덧 1(경기1) 제외
자료: 국세청